

## 《종교문화비평》간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인 《종교문화비평》(이하 학술지)의 간행규정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장 (학술지명)** 학술지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국문으로 《종교문화비평》이라 한다.
2. 영문으로 *The Critical Review of Religion and Culture*라 한다.

**제3조 (간행시기)** 학술지의 발간 간기는 연 2회로 한다.

1. 상반기에는 3월 31일에 간행한다.
2. 하반기에는 9월 30일에 간행한다.

**제4조 (투고시한)** 학술지의 투고 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상반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하반기에는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구성)**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관련 전공 연구자로 선정한다.
3. 투고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6조 (심사규정)**

1. 심사는 투고된 모든 학술적 논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학술적 논문이 아닌 기타 종류의 원고들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논문심사의 평가기준과 평가등급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해 '게재', '수정 후 게재', '반려'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4. 논문심사의 구체적 내용은 평가기준, 평가등급, 심사소견(게재 또는 반려사유, 수정 요구사항)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서'의 양식에 의거, 기록한다.
5. 모든 심사위원이 '게재' 판정을 하거나, 2인은 '게재' 1인은 '수정 후 게재' 판정

을 한 논문은 그대로 게재한다.

6. 모든 심사위원, 또는 2인의 심사위원이 '반려' 판정을 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2인은 '수정 후 게재' 1인은 '반려' 판정을 한 논문은 수정후 재심을 한다. 또한 3인의 심사위원 모두가 '수정후 게재' 판정을 한 논문과 심사위원의 판정이 각각 다른 논문은 수정후 게재 한다.
7. 2인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하고 다른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판정을 한 논문과,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판정을 하고 1인의 심사위원이 '반려' 판정을 한 논문은 내용을 수정한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된 사항을 확인하고 게재한다. 수정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게재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8. 필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 제7조 (심사결과와 통보)

1.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2.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정한 기일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투고원칙)

1. 학술지에는 국내외의 종교문화 전반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종교학 및 관련 분야의 원고들을 실는다.
2. 투고할 원고는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여야 한다.
3. 원고 분량은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서평의 경우 60매 내외, 기타 원고의 경우 100매 이내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약간의 가감이 가능하다.
4. 각 논문에는 원고지 5~8매의 국문요약문과 350~500단어의 영문요약문 및 5~8개의 국·영문 키워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논문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타 외국어의 요약문 및 키워드를 게재할 수도 있다.
5. 투고할 원고는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 (게재료와 심사료, 게재 논문의 권리 귀속)

1.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소 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별도로 정한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3.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지적 소유권은 한국종교문화연구소에 귀속된다.

#### **제10조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년 8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2012년 8월 18일 수정
5. 2018년 7월 12일 수정
6. 2019년 8월 30일 수정